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안내사항

2019. 6. 21

관광산업정책과

[목 차]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주요내용 ····· 1

□ 관련 법령 내용 ····· 1

□ 적용 대상 ····· 3

□ 책임보험 및 공제 상품 현황 ····· 3

□ 기타 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 안내 ····· 3

□ 행정처분 ····· 4

□ 시행일 ····· 4

붙임 1.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3의2]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1부.

붙임 2.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3의3]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1부.

Ⅰ. 추진 배경

○ 다수의 야영장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

- ‘18.12.31 기준 등록야영장 2,214개 중 1,342개 업체(60.6%)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, 보험에 가입된 872개 업체의 보상범위도 제각각

○ 최근 6년간 발생한 야영장 내 주요 안전사고 26건에서 32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야영장 내 사고사례 발생 지속

○ 야영장을 등록한 자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야영장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

*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내지 제8항, ‘19.3.4. 개정 / ’19.7.1. 시행

Ⅱ. 주요 내용

□ 관련 법령 내용

○ 관광진흥법 제9조(보험 가입 등)

>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
○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(보험의 가입 등)

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**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**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**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**해야 한다.

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**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**하는 것이어야 한다.

1. 사망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. 다만,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2.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(이하 "후유장애"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4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**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**하는 것이어야 한다.

1.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: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
2.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: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
3.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: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

□ 적용 대상

○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

※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(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)

□ 책임보험 및 공제 상품 현황

○ 각 보험사에서 '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' 상품을 '19.7.1. 전후 출시할 예정이며, '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' 상품 현황이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(www.gocamping.or.kr)을 통해 게시될 예정임

○ 관련 공제 상품은 현재 기준('19.6.21.) 없음

□ 기타 보험 상품 가입자 및 보험 미가입자 안내

○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('19.7.1.)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-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

○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('19.7.1.)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기존 가입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정하거나, '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' 상품으로 변경 가입 안내

○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의 경우

- ‘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’ 상품 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토록 안내

□ 행정 처분

○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: **행정처분 대상**

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2] 행정처분의 기준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사.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4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2개월	취소

※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사항 없음

□ 시행일

○ 야영장업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는 **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**

*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<문체부령 제350호, 2019. 3. 4.> 제1조

- 다만, **‘19.7.1. ~ 7.31.(1개월)** 기간 동안 **계도기간을 운영**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고, 관할 지역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 및 안내